

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5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4월 26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원안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에 보호자를 포함할 경우 타 조례와 지침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“정보취약계층 보호자” 를 별도 용어로 정의하도록 수정하고자 함.
- 동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호자가 반드시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“정보취약계층 보호자” 를 정보취약계층의 가족과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노인복지법」상 보호자로 정의하고,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함.

2. 수정주요내용

- 가. “정보취약계층 보호자” 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제2조제2호).
- 나.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대상에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함 (안 제6조제5호).

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“장애인·고령자 등(「민법」 제909조의 친권자, 「장애인
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및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한다)”를
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“장애인·고령자 등”으로 한다.

1. “정보취약계층”이란 장애인·고령자 등 신체적·사회적·기술적 제약
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
말한다.

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
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정보취약계층 보호자”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, 「노인복지법」 제
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보
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안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
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정보취약계층”이란 <u>장애인·고령자</u> 등 신체적·사회적·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.·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 <u>장애인·고령자</u> 등(「<u>민법</u>」 제909조의 친권자, 「<u>장애인복지법</u>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<u>보호자</u> 및 <u>사실상 보호자</u>를 포함한다)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 <u>장애인·고령자</u> 등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“정보취약계층 보호자”란 「<u>민법</u>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, 「<u>노인복지법</u>」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<u>보호자</u> 및 「<u>장애인복지법</u>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<u>보호자</u>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3.·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

<p>제6조(추진사업)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6조(추진사업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정보취약계층의 친권자·후견인 및 사실상 보호자 등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	<p>제6조(추진사업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<u>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</u></p> <p>6. (개정안과 같음)</p>
--	--	---

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정보취약계층 보호자”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,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 <p>제6조(추진사업)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5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“정보취약계층 보호자”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,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3. ·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제6조(추진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